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교수 공개채용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라.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사행정 절차 수행 불가능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교수 공개채용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라.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사행정 절차 수행 불가능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2. . . 성명 : (인)	2022. . . 성명 :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의거 인사절차상의 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정보주체가 제3자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학력, 경력, 연락처, 병역사항 등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본인 식별(학력 등) 절차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준영구 보관 라.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사행정 절차 수행 불가능으로 접수가 불가함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2. . . 성명 : (인)

의과대학 교원인사 규정

[전문개정 2023.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인제학원 정관’과 ‘인제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1장 제2조에 따라 의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제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원의 구분) ①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초의학교원, 임상의학교원, 인문사회의학교원, 교육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으로 구분한다.

1. 기초의학교원: 기초의학과 관련한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임용된 교원
2. 임상의학교원: 임상학과 관련한 ‘교육, 연구, 진료’를 목적으로 임용된 교원
3. 인문사회의학교원: 의학교육학, 인문의학 및 사회의학과 관련한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임용된 교원
4. 교육중심교원: 교육을 주 목적으로 임용된 교원
5. 연구중심교원: 연구를 주 목적으로 임용된 교원

② 의과대학은 위 1항 이외의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교원의 책무) 교원의 책무는 교육과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것이며, 교원 구분에 따라 수행업무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2장 신규임용

제5조(신규임용) ① 신규임용은 ‘인제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신규임용교원의 직급은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의과대학 교원임용 기준표’ <별표 2>에 따른다.

② 신규임용 대상자는 교원의 책무를 수행할 연구, 교육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업적의 경우 <별표 3>의 각 직급별 최소 업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신규임용자는 직급에 관계없이 의학교육관련 연수를 임용 1년 이내에 1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④ 신규임용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부교수 : 6년
3. 조교수 : 3년

제6조(공개채용) ① 신규임용 공개채용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교수초빙 계획을 수립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고 접수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 전공심사, 성과심사, 면접심사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각 단계별 심사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4. 초빙 공고에는 신규임용 대상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연구, 교육, 봉사 경력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명확히 공개한다.
- ② 제1항의 공개채용 과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 ③ 전공심사 및 성과심사를 위한 경우 외부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 ④ 채용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심사 :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등과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등을 심사한다.
 2. 성과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의 교육 및 연구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연구성과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심사한다.
 3. 면접심사 : 전공심사와 성과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의 적합성을 심사한다.
 4. 예정자심사 : 임용예정자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를 심사한다.
- ⑤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임용예정자의 최종 임용은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3장 재임용

- 제7조(재임용의 절차) 재임용의 절차는 ‘인제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9조(재임용의 절차)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재임용 심사기준) ① 재임용 심의를 위한 최소업적기준을 제외하고, ‘인제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각 직급별 재임용심의대상자는 임용기간 동안 <별표 4>의 최소 업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장 승진임용

- 제9조(승진임용) ①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제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12조(승진임용)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심의한 승진예정자의 최종 승진은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 제10조(승진임용의 심사기준) ① 교원이 승진임용 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표 5>에 따른 직급별 최저 소요연수와 업적인정기간에 산정된 최소 업적기준<별표 6>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② 조교수에 한하여 본교 신규임용 전 경력에 따라 부교수로의 승진소요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제5장 교수업적평가

제11조(연구업적평가) ① 연구업적은 해당 전공학문의 지성적, 과학적 활동과 연관된 모든 형태의 연구 및 창작활동을 포함하며, 연구업적 실적물의 인정범위 및 평가 가중배수는 <별표 7>과 같다.

② 연구업적 실적물의 인정 환산율은 <별표 8>과 같다.

③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의 인정은 학위 취득 당해 직급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중복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제12조(교육업적평가) 교육업적은 교육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활동을 포함하며, 교육업적의 평가항목과 배점점수는 <별표 9>와 같다.

제13조(봉사업적평가) 봉사업적의 평가항목과 배점점수는 <별표 10>과 같다.

부칙

① 이 전문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8년 3월 1일 이전 신규 임용자 및 2017년 10월 이전 승진임용자의 승진임용의 경우, 임용 시 적용한 업적인정기간과 최소업적기준을 따른다. 상기 경과조치에 따라 승진한 임용자의 다음 직급 승진임용절차는 이 전문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의과대학 교원의 책무

구분	교원의 책무
기초의학교원	·의과대학과 대학원 의학계열 교육에서 수업, 실습, 학생평가, 문항개발, 과정개발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 ·학생상담과 지도 등 학생 전반에 대한 내용 ·연구과제 수행, 논문 집필, 기술 개발, 학술대회 활동 등 연구 전반에 대한 내용
임상의학교원	·의과대학과 대학원 의학계열 교육에서 수업, 실습, 학생평가, 문항개발, 과정개발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 ·임상실습에 대한 학생지도, 평가, 과정개발에 대한 내용, 학생상담과 지도 등 학생 전반에 대한 내용 ·연구과제 수행, 논문 집필, 기술 개발, 학술대회 활동 등 연구 전반에 대한 내용
인문사회의학교원	·의과대학과 대학원 의학계열 교육에서 수업, 실습, 임상실습, 학생평가, 문항개발, 과정개발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 ·학생상담과 지도 등 학생 전반에 대한 내용 ·연구과제 수행, 논문 집필, 기술 개발, 학술대회 활동 등 연구 전반에 대한 내용
교육중심교원	·의과대학과 대학원 의학계열 교육에서 수업, 실습, 임상실습, 학생평가, 문항개발, 과정개발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 ·학생상담과 지도 등 학생 전반에 대한 내용 ·연구과제 수행, 논문 집필, 기술 개발, 학술대회 활동 등 연구 전반에 대한 내용 ·학생평가방법 개발, 교육컨텐츠 개발, 교육개선사업 등 교육전문성에 대한 내용
연구중심교원	·의과대학과 대학원 의학계열 교육에서 수업, 실습, 학생평가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 ·학생상담과 지도 등 학생 전반에 대한 내용 ·연구과제 수행, 논문 집필, 기술 개발, 학술대회 활동 등 연구 전반에 대한 내용

<별표 2> 의과대학 교원임용 기준표

구분			수련과정						교수직연한											교수승진 소요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기초의 학 교원	군필		조 교(3)		군복무(3)			조교수(7)						부교수(5)					11년	
			군복무(3)		조 교(3)															
	군필(1년 단기)		군복무	조 교(3)		조교수(8)						부교수(6)					13년			
	군미필		조 교(3)			조교수(9)						부교수(6)					14년			
	군보류		조 교(3)			군복무(3)			조교수(7)						부교수(5)					11년
임상의 학 교원	군필	전공의과정 4년	인턴	전공의(4)			군복무(3)		조교수(6)						부교수(5)				11년	
				군복무(3)			전공의(4)													
				군복무(3)		인턴	전공의(4)													
		전공의과정 3년	인턴	전공의(3)		군복무(3)		임상 강사 (1)												
				군복무(3)		전공의(3)														
				군복무(3)		인턴	전공의(3)													
	군필 (단기)	전공의과정 4년	군복무	인턴	전공의(4)			조교수(7)						부교수(6)				13년		
		전공의과정 3년			전공의(3)		임강													
	군미필	전공의과정 4년	인턴	전공의(4)			임강	조교수(7)						부교수(6)				13년		
		전공의과정 3년		전공의(3)		임강	조교수(8)											14년		
※비 의 사 교원	군필		석사(2)		박사(2)		군복무(2)		연구 강사	조교수(6)						부교수(5)				11년
			군복무(2)		석사(2)		박사(2)													
	군필(1년 단기)		석사(2)		박사(2)		군복 무	연강	조교수(7)						부교수(6)				13년	
			군복무	석사(2)		박사(2)														
	군미필		석사(2)		박사(2)		연강		조교수(8)						부교수(6)				14년	

※ 비의사교원 : 제2조의 2에 정의한 교원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교원.

<별표 3> 의과대학 신규임용 최소 업적기준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업적산출 포함 연한(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6년 이내	5년 이내
연구업적 최소실적			
기초의학교원	400%	1,000%	1,500%
임상의학교원	200%	600%	1,050%
인문사회이학교원	200%	500%	750%
교육중심교원	100%	100%	200%
연구중심교원	600%	1,500%	2,500%
SCI급 최소 논문 편수			
기초의학교원(의사)	3(1)편	9(3)편	8(3)편
기초의학교원(비의사)	4(2)편	12(6)편	10(5)편
임상의학교원(의사)	1(0)편	2(1)편	2(1)편
임상의학교원(치과의사)	1(0)편	2(0)편	1(1)편
인문사회이학교원	1(0)편	2(0)편	3(2)편
교육중심교원	1(0)편	2(0)편	3(1)편
연구중심교원	6(3)편	18(9)편	15(8)편
주1) 연구업적 최소실적은 연구업적 실적<별표 8> 중 의학 관련 분야의 ISSN이 부여된 국내·외 전문학술지, 학위논문, 저서, 편·역서, 특허만 인정함. (국내 전문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국내 SCIE급(SCOPUS 포함) 학술지에 한함. 국외 SCIE급 전문학술지는 SCIE, SSCI, AHCI, SCOPUS 등재지에 한함.) 주2) 의학교육학, 인문의학, 사회의학 관련 학술지에 한해 국내 전문학술지급 논문을 SCIE급과 동일하게 인정함. 주3) SCIE급 최소 논문 편수에서 독자투고는 제외하며, 괄호 안의 편수는 심의대상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편수임.			

<별표 4> 의과대학 재임용 최소 업적기준

구분	조교수	부교수
연구업적 최소 실적		
기초의학교원	250%	750%
기초의학교원(병리학교원)	160%	500%
임상의학교원	85%	250%
인문사회의학교원	85%	250%
교육중심교원	50%	100%
연구중심교원	400%	1,200%
교육업적 최소점수	1.5점	3점
(교육중심교원)	(60점)	(120점)
(연구중심교원)	(1점)	(2점)
봉사업적 최소점수	2점	6점
(교육중심교원 및 연구중심교원)	(1점)	(2점)
주1) 연구업적 최소실적은 연구업적 실적<별표 8> 중 의학 관련 분야의 ISSN이 부여된 국내·외 전문학술지, 학위논문, 저서, 편·역서, 특허, ODA 연구비, 국가연구비 만 인정함. (국내 전문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국내 SCIE급(SCOPUS 포함) 학술지에 한함. 국외 SCIE급 전문학술지는 SCIE, SSCI, AHCI, SCOPUS 등재지에 한함.) 주2) 의학교육학, 인문의학, 사회의학 관련 학술지에 한해 국내 전문학술지급 논문을 SCIE급과 동일하게 인정함. 주3) 교육업적 최소 실적은 의과대학 교육업적 평가항목 및 배점점수<별표 9-1, 별표 9-2>에 기초하여 산정함. 주4) 봉사업적 최소 실적은 의과대학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배점점수<별표 10>에 기초하여 산정함.		

<별표 5> 의과대학 승진임용 최저 소요연수 및 업적인정기간

구분	부교수		교수	
직급별 최저 소요연수	6년		5년	
업적인정기간과 인정률	기간	인정률	기간	인정률
	최근 6년 이내	100%	최근 5년 이내	100%
	최근 6년 이전	0%	최근 5년 이전~6년 이내	80%
			최근 6년 이전~7년 이내	40%
			최근 7년 이전	0%

주1) 2018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 및 2017년 10월 이후 승진임용자에 적용된다. 이전 임용자는 임용 당시 적용한 규정에 정한 업적인정기간을 반영함.

주2) 업적인정기간의 업적 중 본교 임용 또는 승진 이전 업적은 제외됨.

주3)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4) 연구년,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와 업적인정기간에 포함함.

<별표 6> 의과대학 승진임용 최소 업적기준

구분	부교수	교수
연구업적 최소 실적		
기초의학교원	1,000%	1,500%
기초의학교원(병리학교원)	750%	1,100%
임상의학교원	500%	750%
인문사회이학교원	500%	750%
교육중심교원	100%	200%
연구중심교원	1,500%	2,250%
SCI급 최소 논문 편수		
기초의학교원(의사)	9(3)편	8(3)편
기초의학교원(병리학교원)	9(3)편	8(3)편
기초의학교원(비의사)	12(6)편	10(5)편
임상의학교원(의사)	2(0)편	2(1)편
임상의학교원(치과 의사)	2(0)편	1(1)편
인문사회이학교원	2(1)편	3(2)편
교육중심교원	2(1)편	3(1)편
연구중심교원	18(9)편	15(8)편
교육업적 최소 점수	4점	2.5점
(교육중심교원)	(240점)	(200점)
(연구중심교원)	(1점)	(2점)
봉사업적 최소 점수	5점	5점
(교육중심교원 및 연구중심교원)	(1점)	(2점)
교육관련 연수 최소 시간	15시간	15시간
주1) 연구업적 최소실적은 연구업적 실적<별표 8> 중 의학 관련 분야의 ISSN이 부여된 국내·외 전문학술지, 학위논문, 저서, 편·역서, 특허만 인정함. (국내 전문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국내 SCIE급(SCOPUS 포함) 학술지에 한함. 국외 SCIE급 전문학술지는 SCIE, SSCI, AHCI, SCOPUS 등재지에 한함.) 주2) 의학교육학, 인문의학, 사회의학 관련 학술지에 한해 국내 전문학술지급 논문을 SCIE급과 동일하게 인정함. 주3) SCIE급 최소 논문 편수에서 독자투고는 제외함. 주4) 국외 SCIE급 최소 논문 편수의 괄호 안의 수는 심의대상자가 주저자인 논문의 최소 편수임. 주저자 논문편수는 <별표 7>에 따라 각 공동제1저자와 공동교신저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함. 주5) 교육업적 최소 실적은 의과대학 교육업적 평가항목 및 배정점수<별표 9-1, 별표 9-2>에 기초하여 산정함. 주6) 봉사업적 최소 실적은 의과대학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배정점수<별표 10>에 기초하여 산정함.		

<별표 8> 의과대학 연구업적 실적물의 범위 및 평가가중배수

구 분			평가가중 배 수	비 고
학위논문*	석 사		1.0	
	박 사		2.0	
국내외학술지*	SCIE 급 (AJIFP ^① 차등)	AJIFP ≥ 95%	5.0	의학교육학, 인문의학, 사회의학 관련 학술지에 한해 국내 전문학 술지급 논문을 SCIE급과 동일하 게 인정하며, AJIFP가 없는 SCOPUS등재지와 더불어 평가가 중배수는 2.0으로 산정한다.
		AJIFP : 80~94.99%	4.0	
		AJIFP : 50~79.99%	3.0	
		AJIFP : 10~49.99%	2.0	
		AJIFP < 10%	1.5	
국내학술지*	일 반		1.0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 후 보지
편·역 서*			1.0	
특 허*	국 제	등 록	3.0	출원과 등록은 중복하여 인정하 되, 출원 후 등록 시 등록 평가가 중배수의 80%만 인정함.
		출 원	0.6	
	국 내	등 록	2.0	
		출 원	0.4	
저 서*	국 제	우 수	3.0	일반저서의 경우 총 30페이지 미만 의 소책자는 제외하고, 저서의 우수 여부는 인정 요청 시 교원인사위원 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본인 기여 50 페이지 이상).
		일 반	2.0	
	국 내	우 수	1.5	
		일 반	1.0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연구비 수혜실적에 따른 간접비*			1.0	연간상한 300%
국가연구사업*			1.0	연간상한 100%
대 학 논 문 지 및 기타 국내·외학술지 ^②			0.5	
학술회의 발표논문	국제 학회 주관 초청강연		1.0	
	국제 학회 주관 구두발표		0.7	
	국제 학회 주관 포스터발표		0.5	
	국내(전국규모) 학회 초청강연		0.7	
	국내(전국규모) 학회 구두발표		0.5	
	국내(전국규모) 학회 포스터발표		0.3	
보고서 (중앙관리분만 인정)	용역	국가용역	0.5	
		각종 교외용역	0.3	
	총장이 인정하는 인제대학교 명의의 각종 보고서(다만, 학술연구 목적 보고서는 제외함.)		1.0	

① AJIFP는 학술지 출판일자 기준으로 적용한다. (매년 9월 갱신)

② 기타 국내·외학술지는 SCIE급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는 아니지만, 반드시 동료논
문평가시스템(peer review system)을 갖춘 전문학술지이어야 한다.

“*”의 항목은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서 반영하는 업적항목이다.

<별표 9-1> 의과대학 교육업적 평가항목 및 배점점수(1)

평가항목			배점점수	비고
수업 (학기별)	1-4시간		0.5	학생 강의 및 기초의학 실습 시간은 실시간으로 인정하며, 과정 책임교수의 확인이 필요함. 대학원 계열필수 수업만 인정함. [병원, 타 대학 학생 강의는 인정하지 않음]
	5-8시간		1.0	
	9-16시간		1.5	
	17-32시간		2.0	
	33-64시간		4.0	
	65-96시간		5.0	
	97-128시간		6.0	
	129-160시간		7.0	
	161-192시간		8.0	
	193시간 이상		9.0	
임상실습 (학기별)	주간성찰 피드백		0.1	1) 임상실습 포트폴리오시스템의 기록에 따라 자동 반영됨 2) 임상실습 포트폴리오시스템이 불가한 경우, 학생인턴 임상실습보고서에 담당교수가 직접 서명한 경우 인정하며, 주(책)임교수 및 해당 병원 임상교육연구부학장의 확인이 필요함
	일일 실습 기록 확인		0.01	
	외래 예진 교육과 기록지 평가 (학생인턴, 장기추적통합임상실습 포함)		0.1	
	입원환자교육과 의무기록 평가		0.1	
	발표(증례발표, SNAPPS) 평가		0.1	
	기본임상술기 평가		0.1	
	관찰임상술기 확인		0.01	
	문제바탕소그룹토의 평가 (2회 튜터링+과제평가 포함)		0.25	
	선택실습	CPX 평가, 저널발표 평가, 자유기록현장평가,	0.1	
	학생인턴	참여교수	1.0	
	장기추적 통합임상실습 (LIC)	책임교수	1.0	
		코디네이터교수	1.0	
		참여교수	0.5	
학생 면담 및 카운슬링 (학기별)	1-5회		0.5	학생 면담 및 카운슬링 양식에 따라 그 결과를 의과대학 행정실에 보고하여야 인정함 [단, 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면담의 경우 학생 개인별 면담서 작성 건수로 대체함]
	6-10회		1.0	
	11-15회		2.0	
	16-20회		3.0	
	21-25회		4.0	
	26-30회		5.0	
	31-35회		6.0	
	36-40회		7.0	
	41-45회		8.0	
	46회 이상		9.0	
학생 교육과정 참여	통합교육과정 책임교수		4.0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기 개월 수를 반영하여 환산함
	통합교육과정 부책임교수, 과목별 실습담당교수, 학년별 담임교수		3.0	
	학생 교육 관련 위원회* 위원장, 간사		2.0	
	학생 교육 관련 위원회* 위원		1.0	지도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1/교수 수로 계산함
	내과 분과 별 실습담당교수		1.0	
	핵심임상실습멘토링의 멘토교수 (임상실습포트폴리오평가 포함)		1.0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기 개월 수를 반영하여 환산함.(학생당)

* 학생 교육 관련 위원회는 학생지도위원회, 의학교육과정위원회, 의예과교육과정위원회, 통합교육과정책임·부책임교수회, 임상교육과정위원회, 각 병원별임상교육연구위원회, 학생역량개발위원회, 의과대학학생선발위원회 등 학장이 인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별표 9-2> 의과대학 교육업적 평가항목 및 배정점수(2)

평가항목		배정점수	비 고
교내외 학생교육 관련 연수	학생교육관련 연수 프로그램 또는 학생교육관련 학회 강사 참여	2.0	1일 당 환산(배정점수 × 참여일 수) 강사가 아닌 경우에도 강사에 준하는 참여 실적물을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학생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또는 학생교육관련 학회 단순 참여	0.5	3시간 초과
		0.3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0.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0.1	1시간 이하
학생 교육 참여	학생 연구 활동 지도교수(학회 또는 세미나 발표 포함), 의과학자 과정 지도교수(심화)	3.0	지도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1/교수 수로 계산함.
	학생인턴과정(선택심화실습) 지도교수	3.0	
	의과학자 과정 지도교수(탐색)	2.0	
	PBL/CBL module, MEQ 개발	3.0	건당 환산. 임상실습 관련 내용은 참여교수의 서명이 있는 경우 인정하며, 주(책)임교수 및 해당 병원 임상교육부학장의 확인이 필요함
	임상실습 소그룹 토의 module 개발	0.5	
	기초/임상의학 종합평가 문항개발	3.0	
	의사국시 문항개발/출제 참여	3.0	
	OSCE/CPX station 개발	3.0	
	OSCE/CPX station 수정	0.5	
	e-Learning module 개발	3.0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0.5	
	문제바탕학습(PBL) tutor, 임상실습 소그룹 토의 tutor	0.5	
	mini-OSCE/OSCE/CPX 참여	0.5	4시간 이내
		1.0	4시간 이상
	임상술기지도(skills lab) 참여	0.5	1-2시간
		1.0	3-4시간
	종합평가 문항 검토	0.05	문항당
	학생 진료역량 개발 지도 (피드백 및 재교육 포함)	1.0	1일 당 환산. 배정점수 × 참여일 수
	의사국시 실기시험 채점 참여	1.0	
	종합임상의학과과정 학습 지도	1.0	
	학생 국외전공연수/해외연수 인솔	1.0	지도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1/교수 수로 계산함
	포트폴리오평가위원(시기/졸업)	1.5	
학생 교육 개선사업	프로그램 개발	5.0	교무위원회 심의 후 인정하는 학생 교육 개선사업에 한함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3.0	
	보고서 작성	5.0	
학생 선발과정 참여	입학전형 면접문항(MMI station) 개발	3.0	1일 당 환산. 배정점수 × 참여일 수
	입학전형 서류 심사	1.0	
	입학전형 면접 심사	2.0	
대학원 석·박사 배출	석사 (천일제 석사)	1.0 (2.0)	배정점수 × 학위취득 지도학생수 (의학 학위 졸업자에 한함)
	박사 (천일제 박사)	1.5 (3.0)	
기타	기타 학생교육 관련 활동	0.5 이상	교무위원회 심의 후 결정 [단, 경고의 경우 차감함]
	교육 관련 학장 서면 경고	1.0 이상	

<별표 10> 의과대학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배정점수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정점수	비 고
교내 보직	의약부총장, 의료원장, 부의료원장	5	-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기 개월 수 반영하여 계산 가능
	대학장, 처(실)장, 대학원장, 부속병원장	5	
	부처(실)장, 부속병원부원장, 부학장, 대학원부원장	4	
	부학장보, 기타 부속(설)기관장, 부설연구소장	3	
	기타 부속(설)기관 부원장, 주(책)임 교수, 영어로 수업하는 교과목 담당교수	2	
	기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보직	1 이상	
교 내 위원회 (총장 위촉) 활 동	평의회 의장	4	-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기 개월 수 반영하여 계산 가능
	각종 위원회 위원장	2	
	평의회 부의장, 간사	2	
	각종 위원회 위원	1	
	평의회 분과위원회 위원장	1	
각종 수상	국제단체수여	5	- 건당 환산함
	국가수여	3	- 건당 환산함
	학교, 공공단체수여	2	- 건당 환산함
학회 활동	국제학회 회장	5	-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기 개월 수 반영하여 계산 가능 - 임원의 범위 : 부회장, 이사, 간사, 총무, 고문, 감사 등
	국제학회 임원, 국내학회 회장 또는 이사장	4	
	국내학회 임원, 국제학회 편집위원	3	
	국내학회 지회장	2	
	국내학회 지회 임원, 국내학회 편집위원	1	
	기타 각종 교외연구소 연구위원	0.5	
사회 봉사	중앙정부자문(고문평가)위원 각종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상임대표 또는 회장	3	-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기 개월 수 반영하여 계산 가능
	지방자치단체자문(고문·평가)위원 각종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임원 (공동대표,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 고문 등)	2	
	공공단체자문(고문·평가)위원 산업체자문(기술고문)위원 의생명공학부 특성화사업 운영위원	1	
	신입생 유치를 위한 지역 방문홍보 공식 참가 실적 우수 교수	1	- 건당 환산함
	신입생 유치를 위한 지역 방문홍보 공식 참가 교수	1	- 건당 환산함(최대 1)
	국내외 대학 입학 박람회 공식 참가 교수	0.5	- 건당 환산함(최대 3)
	교내외 강연 또는 특강 각종 고시등 교외 시험문제 출제위원 TV 또는 라디오 출연 교내외 신문 또는 각종 언론매체 칼럼수준 게재물이나 보도 (연구업적 실적물과 중복인정 불가)	0.5	- 건당 환산함 (최대 5, 2002.3.1. 실적부터 적용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보건복지부 주관 또는 보건산업진흥재단 등에 준하는 기관의 위촉으로 평가물을 심사할 경우	0.5	- 건당 환산함(최대 2)
	각종 교외 주최 학술발표대회 등에서 수상 학생을 배출한 지도교수	0.5	- 건당 환산함(최대 2)
	각종학회 및 강좌의 좌장 및 진행자	0.5	- 건당 환산함
	대민 무료 진료 봉사	0.5	- 건당 환산함
	기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봉사 활동 사항 (예 : 동아리 지도교수)	0.5 이상	- 건당 환산함